|  |  |  |
| --- | --- | --- |
| **경영자집중 경쟁 영향평가에 대한**  **잠정규정**  상무부 공고 2011년 제55호  경영자집중 반독과점 심사에서의 경쟁영향 평가를 규율하고 경영자의 경영자집중 신고업무를 지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경영자집중 신고방법》 및 《경영자집중 심사방법》에 의거 상무부는 《경영자집중 경쟁 영향평가에 대한 잠정규정》을 제정하였다. 이에 공포하며, 2011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상무부  2011년 8월 29일  **제1조** 경영자집중 반독점 심사업무를 규율하고 경영자집중이 경쟁에 주는 영향을 평가하여 경영자들이 경영자집중 신고업무를 잘하도록 지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에 의거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상무부는 법에 따라 경영자 집중행위에 대한 반독과점 심사를 실시한다.  **제3조** 경영자집중 심사는 개별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특징에 따라 아래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집중에 참여한 경영자가 관련 시장에서 점한 시장비율과 그 시장 통제력  (2) 관련 시장의 시장집중도  (3) 경영자집중이 시장진입, 기술진보에 주는 영향  (4) 경영자집중이 소비자와 기타 관련 경영자에 주는 영향  (5) 경영자집중이 국민경제 발전에 주는 영향  (6)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시장경쟁에 영향을 주는 기타 요소.  **제4조** 경영자집중이 경쟁에 주는 불리한 영향을 평가할 때에는 먼저 어느 경영자가 집중을 통해 단독적으로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능력, 동기 및 그 가능성을 획득했거나 보강했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집중과 관련되는 시장에 소수의 몇 개 경영자만 있는 경우에는 관련 경영자들이 집중을 통해 공동으로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능력, 동기 또는 그 가능성을 획득했거나 보강했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집중에 참여한 경영자가 동일 관련시장의 실제 또는 잠재적 경쟁자가 아닌 경우에는 집중이 상하류 시장 또는 관련 시장에서 경쟁효과를 배제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지를 심사해야 한다.  **제5조** 시장 점유율은 관련 시장구조, 경영자 및 그 경쟁자의 관련 시장에서의 지위를 분석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시장 점유율은 관련 시장구조, 경영자 및 그 경쟁자의 관련 시장에서의 지위를 직접적으로 반영하였다.  집중에 참여한 경영자가 시장 통제력을 취득했거나 증가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아래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집중에 참여한 경영자의 관련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 및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상황  (2) 집중에 참여한 경영자의 제품 또는 서비스의 대체 정도  (3) 집중과 관련되는 시장 내의 집중 미참여 경영자의 생산능력, 그 제품 또는 서비스가 집중에 참여한 경영자의 제품 또는 서비스와의 대체 정도  (4) 집중에 참여한 경영자의 판매시장 또는 원자재 구매시장 통제력  (5) 집중에 참여한 경영자의 상품 구매측이 상품 공급상을 바꾸는 능력  (6) 집중에 참여한 경영자의 재력과 기술조건  (7) 집중에 참여한 경영자의 하류 고객의 구매력  (8) 고려해야 하는 기타 요소.  **제6조** 시장 집중도란 관련 시장구조에 대한 일종의 서술로서 관련 시장내 경영자의 집중정도를 구현하며, 통상적으로 허핀달-허쉬만 지수(HHI지수)와 업계의 앞 N개 기업의 공동 시장점유율(CRn시장, 이하 업계집중도 지수라 함)로 평가할 수 있다. HHI지수는 집중과 관련되는 관련시장 내 모든 경영자의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것이며, 업계집중도는 집중과 관련되는 관련시장 내 앞 N개 경영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이다.  시장집중도는 경영자의 집중 경쟁영향을 평가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통상적인 상황에서 관련시장의 시장집중도가 높을수록 집중 후 시장집중도 증가량이 높으며, 집중으로 경영 배제, 제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다.  **제7조** 경영자집중은 관련시장의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다. 집중 후 경영자는 집중으로 취득했거나 보강된 시장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생산요소, 판매루트, 기술우위, 관건시설 등에 대한 통제를 통해 기타 경영자가 관련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저애할 수 있다.  경영자집중이 주는 경쟁영향을 평가할 때에는 잠재적 경영자의 진입으로 발생하는 상쇄 효과를 고려할 수 있다.  집중과 관련되는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경우 집중에 참여하지 않은 경영자들은 집중 거래측의 경쟁 배제, 제한 행위에 대해 반응하여 그에 대한 억제작용을 발휘할 수 있다.  시장진입의 난이정도를 판단할 때에는 진입 가능성, 적시성 및 충분성을 전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8조** 경영자는 집중을 통해 기술 R&D 자원과 역량을 더욱 잘 정합할 수 있으며, 기술진보에 적극적인 영향을 가져다주어 집중이 경쟁에 주는 불리한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 그리고 기술진보가 가져다주는 적극적인 영향은 소비자의 이익 증진에 유리하다.  집중은 아래의 방식을 통해 기술진보에 소극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즉, 집중에 참여한 경영자의 경쟁압력을 약화시켜 그 과학기술 혁신 동력과 투입을 줄이게 할 수 있으며, 집중에 참여한 경영자가 집중으로 그 시장통제력을 높여 기타 경영자의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입, R&D 및 활용을 저애할 수 도 있다.  **제9조** 경영자집중은 경제효율을 높이고 규모경제 효과와 범위 경제효과를 실현하고 제품원가를 절감하고 제품의 다양화를 제고할 수 있어 소비자 이익에 적극적인 영향을 준다.  집중은 집중에 참여한 경영자의 시장통제력을 제고시켜 그 경쟁행위 배제, 제한 능력이 강해질 수 있다. 따라서 가격인상, 품질저하, 생산량 제한, 과학기술 R&D에 대한 투자 감소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가능성이 커진다.  **제10조** 경영자집중은 관련시장 경영자들에게 경쟁압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기타 경영자들이 제품품질을 높이고 제품가격을 낮추고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유리하다.  집중을 통해 취득했거나 보강된 시장통제력을 바탕으로 집중에 참여한 경영자는 일부 경영정책과 수단을 통해 집중에 참여하지 않은 경영자의 경영규모 확대를 제한하거나 그 경쟁능력을 약화시킴으로써 관련시장의 경쟁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그 상하류 시장이나 관련시장에 경쟁배제, 제한효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  **제11조** 경영자집중은 경영규모 확대와 시장경쟁력의 보강에 유리하므로 경제효율을 제고시키고 국민경제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  특정된 상황에서 경영자의 집중은 관련시장의 효율적인 경쟁과 관련 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경제에 불리한 영향이 미치게 된다.  **제12조** 경영자집중을 평가할 때에는 상술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외에 공공이익에 대한 집중의 영향, 경제효율에 대한 집중의 영향, 집중에 참여한 경영자가 부도기업인지의 여부, 상쇄성 매입측 역량의 존재 등 요소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13조** 경영자집중이 경쟁 배제, 제한 효과가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무부는 경영자집중을 금지한다. 다만, 경영자가 당해 집중이 경쟁에 주는 유리한 영향이 불리한 영향보다 크거나 또는 사회 공공이익에 부합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상무부는 경영자집중을 금지하지 않는다.  금지하지 않은 경영자집중에 대하여, 상무부는 집중이 경쟁에 주는 불리한 영향을 줄이는 제한성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제14조** 이 잠정규정은 2011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  | **关于评估经营者集中竞争影响的暂行规定**  商务部公告2011年第55号  　　为规范经营者集中反垄断审查的竞争影响评估，指导经营者做好经营者集中申报工作，根据《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经营者集中申报办法》和《经营者集中审查办法》，商务部制定了《关于评估经营者集中竞争影响的暂行规定》。现予公布，自2011年9月5日起施行。  　　　　　　　　　　　　　　　　　　　　　　　　　　　　 商务部 　　　　　　　　　　　　　　　　　　　　　　　　　　　　二0一一年八月二十九日  **第一条**　为规范经营者集中反垄断审查工作，评估经营者集中的竞争影响，指导经营者做好经营者集中申报工作，根据《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制定本规定。  **第二条**　商务部依法对经营者集中行为进行反垄断审查。  **第三条**　审查经营者集中，根据个案具体情况和特点，综合考虑下列因素：  　　（一）参与集中的经营者在相关市场的市场份额及其对市场的控制力；  　　（二）相关市场的市场集中度；  　　（三）经营者集中对市场进入、技术进步的影响；  　　（四）经营者集中对消费者和其他相关经营者的影响；  　　（五）经营者集中对国民经济发展的影响；  　　（六）应当考虑的影响市场竞争的其他因素。  **第四条**　评估经营者集中对竞争产生不利影响的可能性时，首先考察集中是否产生或加强了某一经营者单独排除、限制竞争的能力、动机及其可能性。  当集中所涉及的相关市场中有少数几家经营者时，还应考察集中是  否产生或加强了相关经营者共同排除、限制竞争的能力、动机及其可能性。  　　当参与集中的经营者不属于同一相关市场的实际或潜在竞争者时，重点考察集中在上下游市场或关联市场是否具有或可能具有排除、限制竞争效果。  **第五条**　市场份额是分析相关市场结构、经营者及其竞争者在相关市场中地位的重要因素。市场份额直接反映了相关市场结构、经营者及其竞争者在相关市场中的地位。  　　判断参与集中的经营者是否取得或增加市场控制力时，综合考虑下列因素：  　　（一）参与集中的经营者在相关市场的市场份额，以及相关市场的竞争状况；  　　（二）参与集中的经营者产品或服务的替代程度；  　　（三）集中所涉相关市场内未参与集中的经营者的生产能力，以及其产品或服务与参与集中经营者产品或服务的替代程度；  　　（四）参与集中的经营者控制销售市场或者原材料采购市场的能力；  　　（五）参与集中的经营者商品购买方转换供应商的能力；  　　（六）参与集中的经营者的财力和技术条件；  　　（七）参与集中的经营者的下游客户的购买能力；  　　（八）应当考虑的其他因素。  **第六条**　市场集中度是对相关市场的结构所作的一种描述，体现相关市场内经营者的集中程度，通常可用赫芬达尔-赫希曼指数（HHI指数，以下简称赫氏指数）和行业前N家企业联合市场份额（CRn指数，以下简称行业集中度指数）来衡量。赫氏指数等于集中所涉相关市场中每个经营者市场份额的平方之和。行业集中度指数等于集中所涉相关市场中前N家经营者市场份额之和。  　　市场集中度是评估经营者集中竞争影响时应考虑的重要因素之一。通常情况下，相关市场的市场集中度越高，集中后市场集中度的增量越大，集中产生排除、限制竞争效果的可能性越大。  **第七条**　经营者集中可能提高相关市场的进入壁垒，集中后经营者可行使其通过集中而取得或增强的市场控制力，通过控制生产要素、销售渠道、技术优势、关键设施等方式，使其他经营者进入相关市场更加困难。  　　评估经营者集中竞争影响时，可考察潜在竞争者进入的抵消效果。  　　如果集中所涉及的相关市场进入非常容易，未参与集中的经营者能够对集中交易方的排除、限制竞争行为作出反应，并发挥遏制作用。  　　判断市场进入的难易程度，需全面考虑进入的可能性、及时性和充分性。  **第八条**　经营者通过集中，可更好地整合技术研发的资源和力量，对技术进步产生积极影响，抵消集中对竞争产生的不利影响，并且技术进步所产生的积极影响有助于增进消费者利益。  　　集中也可能通过以下方式对技术进步产生消极影响：减弱参与集中的经营者的竞争压力，降低其科技创新的动力和投入；参与集中的经营者也可通过集中提高其市场控制力，阻碍其他经营者对相关技术的投入、研发和利用。  **第九条**　经营者集中可提高经济效率、实现规模经济效应和范围经济效应、降低产品成本和提高产品多样化，从而对消费者利益产生积极影响。  　　集中也可能提高参与集中经营者的市场控制力，增强其采取排除、限制竞争行为的能力，使其更有可能通过提高价格、降低质量、限制产销量、减少科技研发投资等方式损害消费者利益。  **第十条**　经营者集中可能提高相关市场经营者的竞争压力，有利于促使其他经营者提高产品质量，降低产品价格，增进消费者利益。  　　凭借通过集中而取得或增强的市场控制力，参与集中经营者可能通过实施某些经营策略或手段，限制未参与集中经营者扩大经营规模或削弱其竞争能力，从而减少相关市场的竞争，也可能对其上下游市场或关联市场竞争产生排除、限制竞争效果。  **第十一条**　经营者集中有助于扩大经营规模，增强市场竞争力，从而提高经济效率，促进国民经济发展。  　　在特定情况下，经营者集中也可能破坏相关市场的有效竞争和相关行业的健康发展，对国民经济造成不利影响。  **第十二条**　评估经营者集中时，除考虑上述因素，还需综合考虑集中对公共利益的影响、集中对经济效率的影响、参与集中的经营者是否为濒临破产的企业、是否存在抵消性买方力量等因素。  **第十三条**　经营者集中具有或者可能具有排除、限制竞争效果的，商务部应当作出禁止经营者集中的决定。但是，经营者能够证明该集中对竞争产生的有利影响明显大于不利影响，或者符合社会公共利益的，商务部可以作出对经营者集中不予禁止的决定。  　　对于不予禁止的经营者集中，商务部可以决定附加减少集中对竞争产生不利影响的限制性条件。  **第十四条**　本暂行规定自2011年9月5日起施行。 |